

#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과제와 발전방안

이 윤 근

(동국대 교수, 경찰행정학)

## I. 서 론

최근 우리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정보화 시대로 급속히 변동하면서 야기되는 각종 사회병리현상들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와 무질서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국민생활안전(민생치안)에 대한 각종 사회불안현상<sup>1)</sup>은 각종 사회 통계 자료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우려할 정도를 지나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회불안 요인들이 이제 우리 사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국민들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모두가 범죄의 표적이 되어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르

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범죄의 위협에 국가 공권력의 최일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경찰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회질서유지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여야 하는 다양하고 과중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찰의 역할과 경찰기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경찰인력 및 예산의 부족, 낙후된 경찰장비, 낮은 보수체계, 과중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그리고 각종 조장행정기능에 대한 협조업무 등이 경찰방범활동의 대내외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찰의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날로 급증하는 각종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경찰력 부족으로 야기되는 사

1) 지난 수십년간 범죄발생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995년 한해동안 133만여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96년 8월에는 법인이 감실 1동 파출소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살해하고 권총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였고, 연세대에서는 한총련의 농성 및 시위 등으로 5천여명의 대학생이 일시에 연행되고 4백여명이 구속되었으며 수백억원의 재산피해와 시위진압경찰관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들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회병리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범죄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과정을 이미 겪은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의 범죄예방제도인 민간경비산업을 연구발전시켜 지금은 경찰의 범죄예방능력과 상응하는 존재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차원의 범죄예방 조직을 육성 발전시켜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국민 생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경찰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하여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며 향후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과제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방법능력증대를 위한 과제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첫째, 법률적 제도적 사항, 둘째, 경비원 자질 향상을 위한 사항, 셋째, 연구 및 발전효과를 위한 사항, 마지막으로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

력증진을 위한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총체적 방법체제 구축을 위한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국가적 지원대책 그리고 1997년부터 해외시장에 개방되는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등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이다.

### 1. 법률적·제도적 과제

#### 가. 경비업의 허가기준

민간경비업의 설립은 현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비업자체가 상업성을 가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업무상의 특성 때문이다.

경비업무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경비업 허가기준은 전과기록만 없는 자라면 누구든지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경비업자가 되려면 이 분야에 상당한 기간의 경력과 학문적인 배경을 요구하고 있다.<sup>2)</sup> 따라서 무분별한 경비업의 허가남발을 막고 경비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의 전과조회, 학력, 경력 그리고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엄격한 신원보증을 받도록 검증

2) Ricks, A. Truett, and Tillett, B. G., Principles of Security (Cincinnati, Ohio : Anderson Publishing Co., 1981), pp. 240~241.

절차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경비원의 자질문제**

경비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방법외에도 경비원의 능력과 자질

에 따라 국가가 공인하는 검정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하여 경비원 스스로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원자력핵연료 수송이나 공항터미널 검색기능, 귀중품·현금수송업무 등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업무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sup>3)</sup> 이와 같은 전문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경비원들의 전문교육 실시를 위하여 프로그램이 마련된 교육기관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 경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다. 경비원 교육책임자 문제**

민간경비업의 전문화와 경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경비지도사 제도나 기계경비지도사 제도를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킬 전문지식을 가진 일정 수준 이상의 교관요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간부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나 법적·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간경비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경비원들의 교육훈련책임자들에 대한 교육기관, 시험출제, 교육과정이수, 자격증 관리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간경비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경비원들의 교육훈련책임자들에 대한 교육기관, 시험출제, 교육과정이수, 자격증 관리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어져야 하겠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들에 대한 CPP (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 프로그램이나 지도교육책임자 제도를 통하여 경비원들을 전문화 시키고 있다.

**라. 경비원들의 장비취급문제**

경비원들의 방법활동에 있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들이 취급하는 장비취급수준 정도를 경찰, 경비업자, 경비원 3집단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객관적 위치에 있는 경찰은 경비원들이 경적(95.9%), 곤봉(94.6%), GAS분사기(93.2%), 무전기(91.9%), 소화기(89.2%), GAS총(85.1%) 정도는 갖추고 방법활동에 임하여야 한다고 80% 이상이 응답하고 있다.

또한 수갑(44.6%)과 밧줄(52.7%)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경찰의 18.9%가 경비원들도 총기를

3) Security Time, 1996년 7월호 (Vol. 193), 일본전국경비협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80% 이상은 경비원들이 충기를 소지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현재 경비원들이 취급하고 있는 장비는 경적이나 곤봉정도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 Gas총을 취급하는 경비업체가 몇군데 있을 뿐이며 실질적인 방법활동을 위하여서는 경비원들의 장비보강문제가 심도있게 검토되어 져야 할 것이다.

#### 다. 손해배상문제

대부분의 경비업체가 고객들과 경비도급계약시 경비원들의 경비근무 잘못으로 발생하는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경비업자가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에 대한 상호간의 개념 정리가 분명하게 사례별로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 종종 법정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이들 손해배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보험회사에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협회자체에서 실시하는 공제회제도에 가입하기도 하지만 고객의 요구에 따라 또다른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받고 있어 경비업자들에게 과중한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다.

## 2.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과제

### 가. 선발과정

대부분의 민간경비업체들이 경비원 선발과정시 면접, 경력조사, 전과조회, 신원조사, 지원동기 등에 대하여 80% 이상을 고용절차에 포함시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도 실시하고 있는 경비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경비인력은 줄어드는 반면에 경비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부족한 경비인력을 시급히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원 채용시 신원조사나 전과조회를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생략하는 업체가 있어 경비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우수인력 확보와 경비업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경비원들의 선발과정 절차를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 나. 경비원의 교육훈련

용역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신임경비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을 1996년 용역경비업법 개정에 의해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였다.<sup>5)</sup>

그리고 동 규정에 의하여 용역경비협회는 신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찰교육기관 또는 교육에 필요한 인력·시설을 갖춘 용역경비업자에게 위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경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4) 이 윤근,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1990, pp. 119~120.

5) 용역경비업법 개정전 신임경비원의 교육시간이 76시간에서 개정후 15시간으로 조정되었다.

영세한 경비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비원들의 방법능력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민간경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영세한 경비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비원들의 방법능력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 다. 생계비보장 문제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매년 12월에 내무부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고시하여 순경 1호봉에 준하는 생계비를 보장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경비원의 경우 대부분 30대, 40대가 전체의 68.2%를 차지하는 가장들로서 매월 수령하는 평균임금이 최저생계비에도 크게 못미치는 보수를 받고 있다. 따라서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우수 경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비원의 보수가 최저생계비는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 져야 하겠다.

### 3. 연구 및 발전효과를 위한 사항

#### 가. 연구기관의 역할미흡

민간경비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비인력의 방

범능력향상을 위하여 민간경비의 내부적인 발전 못지않게 각종 연구소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민간경비에 대한 연구지원으로 LEAA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가 「환경 설계에 의한 범죄예방대책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 및 검토하여 학문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의 실질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방법능력 향상을 가져오고 있다.<sup>6)</sup>

한국의 경우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또는 실질적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는 한 두군데로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들 연구소마저도 민간경비 분야를 다룬지는 불과 몇년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활동과 방법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들의 적극적인

6) ① CPTED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제도로서 LEAA의 지원에 의해 구성된 국가자문위원회 (National Advisory Committee)가 1973년 5개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와같은 CPTED계획을 민간경비 차원에서 연구발전시켜 그 이후 상당한 범죄예방효과와 학문적 발전을 가져왔다. Private Security Standards and Goals, op. cit., pp. 175~178.

② 일본의 경우 일본경찰청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공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도시방범기준의 책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1980년에는 16개 도시를 선정하여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대책을 강구하였다. 上原美都男,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방지」, 경찰학논집, (Vol. 33~12, 1981), pp. 67~87.

참여와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 나. 교육기관의 부족

민간경비의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새로운 인접 학문과의 종합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대학의 기능이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1958년 처음 민간경비 관련학과에서 대학 졸업자를 배출한 이후 현재 미국 전역에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과정에 민간경비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만도 212개이며 CPP 프로그램과 같은 단기 전문자격증 과정은 정확한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민간경비 시장이 영세하고 대학졸업자와 같은 고급인력들을 기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방법기기와 방법설계 등과 같은 전문분야 몇몇 군데에서 대학졸업자 수준의 경비인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96년 현재 경비업체가 931개 회사나 되고 경비인력이 행정직요원과 경비원을 모두 포함하면 6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 민간경비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인 방범활동을 위해서는 대학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계속적으로 양성하고 배출하여야 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

#### 다. 방법기기 생산업체의 역할미흡

민간경비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서는 방법기기의 개발이나 생산 그리고 판매하

는 방법기기 생산업체의 역할도 매우 크게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대기업에서 방법기기 시장의 영세성 때문에 기술개발이나 자본의 투자를 꺼리고 있어 값비싼 외국의 방법기기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법기기의 일반화와 기술개발 및 기술축적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체와 방법기기 생산업체들 간에 국민들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어떠한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민간경비와 방법기기 생산업체들 간의 간격을 좁혀 나가기 위해서는 방법기기의 효용성이나 각종 범죄에 대한 적합성 그리고 가격과 성능간의 비용효과분석(cost benefit analysis)등이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라. 민간경비전담기구의 필요성

민간경비의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민간경비전담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민간경비의 중요 정책사항은 국가공안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각 주마다 규제위원회(Regulatory Board)라는 전담기구를 두어 민간경비의 중요한 정책사항들을 결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1976년 경비업체가 불과 9개 밖에 되지 않던 당시나 경비업체가 931개로 늘어난 지금이나 일부 업무가 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하였어도 대

부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청방법기획과 1~2명의 직원이 모든 경비업체의 행정업무나 지도 및 감독 또는 허가사항을 관장하고 있어 사실상 효과적인 통제 범위는 오래 전에 이미 벗어 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이 성장한다면 10년후인 2000년경에는 민간경비인력(청원경찰 3만포함)이 14만까지 성장하여 지금의 전체 경찰인력(전경, 의경포함)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 산업을 효율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민간경비전담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없이 민간경비의 건전한 육성과 효과적인 지도 및 감독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4.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민간경비업이 발달된 선진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공적 차원의 공경비(public security)인 경찰과 사적 차원의 민간경비와의 긴밀한 상호협조체제를 통하여 방법활동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방법활동이 경찰조직위주로 국가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민간경비와 경찰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이 성장한다면 10년후인 2000년경에는 민간경비인력(청원경찰 3만포함)이 14만까지 성장하여 지금의 전체 경찰인력(전경, 의경포함)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의 협조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별다른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따라서 효율적인 방법활동을 위해서는 양 조직의 협조체계 구축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 가. 방법활동을 위한 정책빈곤

지금까지 범죄예방활동에 있어 일반국민들의 인식이나, 국가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까지도 범죄예방은 국가공권력인 경찰만이 수행하는 업무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민간경비의 역할이나 기능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취급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빈곤으로 인한 현상은 실질적인 분야에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항으로서는 정보의 교환이나 평상시 및 비상시 사건발생에 대비한 업무역할 기준설정 등이 전혀 상호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같은 근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종류, 시간, 방법 그리고 범행의 특성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교환이 필요하고 사건발생시 양 집단이 범죄수사나 범인검거를 위한 업무역할 설정 등을 효율적인 방법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구축하여 둘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대부분의 경우 정책의 빈곤 등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나. 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부족

양 집단이 효율적인 방법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서는 상대방의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만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업무를 깊이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상호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경비만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미리 지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상대방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효율적인 방법공조 체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같이 인식하면서도 정책부재로 상대방의 방법활동 영역에 대하여서는 알려고도 또는 이해하려고도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 다. 상호지원체제의 미흡

경찰과 민간경비의 효율적인 방법활동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정책적인 사항이나 각 조직의 역할에 대한 이해 외에도 지속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교육훈련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세 민간경비업체들을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이나 사격교관들을 방법능력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민간경

비와의 비상연락망 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경비에서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고 있는 각종 경보기기의 설치나 업무협조 사항 등이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잘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조사에 응답한 경찰의 과반수 정도가 민간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고 민간경비는 그들이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경비 교육훈련 시설이나 교관들에 대한 지원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통경비전화설치나 오경보에 대한 대응전략이나 절차수립 등도 양 조직의 지원체제 확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양 조직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 라. 방법홍보활동 부족

경찰이 일반 국민들의 민생치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범죄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자문하여 주기 위한 방안으로 심방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경찰이 가정방문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 별다른 방법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의 주위에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오히려 민간경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방법기기의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파출소와 직접 연결되는 비상벨과 같은 방법기기 설치를 원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경찰과 민간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비업자에 대한 사전적 조치로써 경비관련 학력과 경력을 일정 수준 요구할 필요가 있고 경비업의 내실과 허가요건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사후적 조치로서 허가갱신제도를 경비업법에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경비가 공동으로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불안해 하는 범죄예방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방법기기의 기술적인 분야 등에 대하여 자문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 조식이 팜플렛을 이용한 홍보활동까지 실시할 수 있는 협력체제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어 효과적인 방법활동의 주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있어 상당히 미약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미국 각 주정부의 규제위원회(Regulatory Board)가 민간경비업의 면허와 규제(Licensing/Regulation)에 관한 사항을 경력과 학력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sup>7)</sup>에도 허가갱신제도를 활용하여 민간경비업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경비업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통제 및 규제를 가하고 아울러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비업자에 대한 사전적 조치로써 경비관련 학력과 경력을 일정 수준 요구할 필요가 있고 경비업의 내실과 허가요건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사후적 조치로서 허가갱신제도를 경비업법에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 Ⅲ.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

#### 1. 법률적, 제도적 발전방안

##### 가. 허가기준의 강화

현행 용역경비업법 제 4조에 「용역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당해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경비업의 허가기준이 사전적, 사후적 절차에

##### 나. 검정제도의 실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기 위하여서는 경비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경비원들의 자질이 우선적으로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각 경비원들에

7) 일본의 경우 민간경비업의 허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일본경비업법 제 4조 2항에 허가갱신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계 전문기술과 지식을 검정하는 국가검정제도를 실시하여 경비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검정시험 내용은 ① 경비업무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② 경비업무에 관련되는 기본법률지식 ③ 경비업무분야별 전문기술 및 지식 ④ 민간경비원들에 대한 지휘통솔 능력 ⑤ 총기취급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경비업무 전반에 걸쳐 측정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검정시험에 합격한 경비원들에 대하여서는 자격에 상응하는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주고 고용시 우선적으로 우대 및 신분보장을 하여 주며, 경비반장이나 대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검정시험 합격자로 한정하여 경비원들이 검정시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경비시장이 영세하여 검정제도를 실시한다 해도 자격증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여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향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검정시험의 적정한 수준유지를 위해서 자격증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연구도 함께 검토 되어져야 할 것이다.

#### 다. 일반 및 기계경비지도사 제도

경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에 종사하는 모든 경비원들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전담하는 일

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제도가 96년 용역경비업법의 개정으로 97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일반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업자나 경비원들에 대하여 경비업법에 정하여진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며 감독하는 자로서 경비지도사 교육과정을 강습하고 그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지식과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게 된다.<sup>8)</sup> 이러한 형식에 의하여 임명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실시하여 지도 및 기록 등을 유지하며, 법률에 규정된 경비원의 교육실시 여부를 관리하고, 법률에 규정된 경비업체의 교육실시 기록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며, 경비원의 지도 및 교육에 관하여 경비업자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기계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기계경비에 관한 시설, 경계(책임구역), 지령업무에 관한 기준작성, 통제 및 종사자 감독업무, 경비원과 경찰기관과의 연락에 대한 지도, 기지국의 제반서류 및 장부점검, 기계경비업무에 있어 기계경비업자에게 조언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일반 및 기계경비지도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서는 민간경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양질의 경비서

8) 용역경비업법 제 6조의 2(경비지도사의 선임)

비스가 일반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때 민간경비에 대한 새로운 수요창출과 경비지도사의 필요성이 더 한층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제조합회 기능과 이행보증보험기능을 다 가진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경비회사와 고객 모두가 상호신뢰하고 각자의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것도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방범능력 향상의 발전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장비의 현대화**

경비원의 장비취급수준은 현행 용역경비업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제모, 제복, 제화의 형태, 색상등이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 13조에서는 장구의 종류는 혁대, 경봉, 경적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특수한 성격때문에 경비시설물에 상응하는 색상이나 디자인 그리고 규격 등에 대하여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1995년에 용역경비업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비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근무시 성격에 따라 가스총은 무기휴대허가를 득할 경우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방범활동과 경비원들의 신속한 범죄대응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무전기 휴대도 늘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외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가격이 저렴하고 휴대하기 편리한 Gas분사기와 같은 신변보호장비도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 하여 경비원들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마. 손해배상제도**

고객들에 대한 경비업자들의 손해배상제도는 현재 대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제도와 공제

조합운영과 같은 두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같은 제도들은 일반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적 보장제도이지 경비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적 보장제도는 되지 못하고 있다.

이행보증보험제도는 일반고객들에게 경비원들의 경비업무 잘못으로 발생한 고객들의 손해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하여 주고 그 다음 경비업자에게 배상피해액 만큼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경비업자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단지 고객들에게 안심하고 경비업무를 경비회사에 맡기게 하는 사후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용역경비업법이 1990년도 개정되어 공제조합운영이 법적으로 제도화되기는 하였지만 이 제도 역시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경비시설물이나 경비가입 고객에 따라 위의 두가지 손해배상제도 외에도 별도의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도록 고객들이 요구하고 있어 경비업자들에게 이중적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비업자들에게 이중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반 고객들에게도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회사

측에서 경비관련 보험상품들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가지 예로써「경비배상책임보험」이라는 공제조합회 기능과 이행보증보험기능을 다 가진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경비회사와 고객 모두 상호신뢰하고 각자의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것도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방법능력 향상의 발전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민간경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고 이와 같은 제도를 바탕으로 민간경비시장이 오늘날과 같이 엄청난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성장은 다양한 보험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업계와 경비업계가 방법능력증대와 국민들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간경비와 보험업계에 대하여 경비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세계상의 혜택」을 검토하여 양 업계의 활성화를 꾀하여 보는 것도 지금과 같이 어려운 민생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인력개발 발전방안

### 가. 인력선발 발전방안

해마다 경비수요는 늘어만 가는데 경비인력은 해가 갈수록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인력부족 현상은 비단 경비시장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인력부족이 경비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물론 우수한 경비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적절한 보수규정과 근무조건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현재의 한국 민간경비 업계는 여러가지 면에 있어 이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민간경비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적정보수규정

우수한 경비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현재와 같이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는 경비시설물의 도급액수에 따라 경비원의 보수가 책정되는 불합리한 방법을 지양하고 경비시설물의 도급에 관계없이 경비원 개인의 경비능력, 경력, 교육수준, 기술, 책임감 그리고 자격증 유무에 따라 보수수준을 결정하는 전체적인 체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1986년 7월 1일부터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검정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이들 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하여서는 공항보안 및 검색업무, 교통유도업무, 핵연료운반업무, 그리고 현금 및 귀중품 운반업무 등

과 같은 중요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자격증을 가진 경비원을 얼마만큼 각 경비회사가

경비협회나 경비업체들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정부기관에서는 전체 경비원들의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엄격한 통제범위 내에서 민간경비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여 나가는 방안도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경비회사의 신뢰도가 달라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발과정에서 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어 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체계화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 (2) 임용전 여과과정

임용전 신임경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면접이나 신원조회 그리고 전과조회 등이 임용전 여과과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면접의 경우 대부분 지원 동기, 경력, 직업에 대한 전문지식 그리고 다른 직업과의 관계등을 알아보는 것이 대부분이고<sup>9)</sup> 신원조회는 단순히 연락처나 소정양식의 서류를 제출하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다소간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상설조사기관을 회사내에 두어 신입직원들의 능력이나 성격,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정례적으로 조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전과조회는 모든 경비업체에서 대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편이지만, 다른 어떠한 절차보다도 가장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경비시

설물에 대하여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한 경비원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이 근무하였던 경비시설물에 도둑이 되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외국에서는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서는 새로 고용할 경비원에 대해서는 위에서 소개한 몇 가지 여과절차는 꼭 거쳐야 할 것이다.

### (3) 경비업자들 간의 정보교환

선발과정에 있어 지원자의 신원에 대하여 경비업자들 상호간에 이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우수 경비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상당히 유익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경비원들의 전직이 심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들을 고용하고 있었던 경비업자로부터 지원자의 정직성, 책임감, 애사심, 판단력, 성실성 그리고 태도 등에 관하여 아주 유용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벽성, 마약, 인간관계, 신용도, 폭력사용, 그리고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서도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비협회나 경비업체들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정부기관에서는 전체 경비원들의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개인의 사생활

9) 면접시험은 필기시험등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자질이나 능력, 창의성, 협조성, 지도력, 성격 등을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을 침해하지 않는 엄격한 통제범위 내에서 민간경비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여 나가는 방안도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 (4) 여자경비원의 채용

수년전까지만 하여도 여자경비원들의 경비업무 참여는 안내(information)역할이나 여성고객들의 검색기능과 같은 몇몇 기능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비원의 보수가 점차 좋아지고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어 여성들의 경비업무분야 고용도 점차 확대되어 지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여성인력의 활용에 대한 선발방안도 계속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은 1964년 시민권리법(Civil Right Act)에 의하여 성별, 인종, 종교,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금지조항이 제정된 이후 여성들의 경비 업무 분야 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5년 12월말 현재 여성인력의 민간경비 분야의 진출현황은 전체경비원 358,415명중 23,847명으로 전체 경비인력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다.<sup>11)</sup>

한국의 경우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고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여성들의 경비업무 참여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

서 한국의 경우에도 경비인력 부족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휴 고급 여성인력들의 경비 업무 분야 참여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질 필요가 있다.

#### 나. 경비전문교육학교 설립

민간경비에 있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교육이다. 이것은 경비업에 있어 수단인 동시에 방법이기도 하며 민간경비의 정책과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비전문교육학교는 경비원뿐만 아니라 경비업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교관, 훈련계획, 교과편성 그리고 교육훈련의 사후평가 등과 같은 일련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경비업무 교육훈련 전담기관이다. 교육훈련기관은 크게 중앙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전문교육학교와 외부의 경비전문교육기관으로 나눌 수 있고, 교관은 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그리고 경찰교관 및 외부전문강사들로 구성할 수 있겠다. 훈련계획은 훈련계획준비, 입안, 실시 그리고 평가 4단계로 수립되며, 교과편성은 피교육생의 능력이나 업무의 전문성에 준하여 적절한 교과목 편성이나 시간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훈련의 사후평가는 교육대상에 따라 수료증과 자격증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10) 미국 Pinkerton 1개 경비회사에서만 150만명 이상의 개인신상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미국의 경찰, 현대경찰문고(서울 : 제일가제법령출판사, 1982), p. 284.

11) Security Time, 1996년 7월호(Vol. 193), 일본전국경비협회.

학교교육의 종류는 경비원의  
신입교육, 보수교육, 전과교육,  
경비지도사 그리고 경비업자교육  
등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경비산업의 수요에  
부응하고 경비인력의 전문적인 양성을 위하여  
경비전문교육학교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며, 교육훈련방법은 강의, 시청각 방법, 실습,  
분임연구, 사례연구, 그리고 시찰 등으로 구  
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경비전문교육학교의 성격, 운영,  
교육종류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  
듯이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경비산업의  
수요에 부응하고 경비인력의 전문적인 양성을  
위하여 경비전문교육학교 설립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특히 국민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비업무의 중요성과 분단된 조국의  
국가 방위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경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경비전문학교 설립은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 다. 후생복지제도

경비원들의 자질향상은 직무만족을 통하여  
피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조사응답자의 84%가 취업동기에 대하여  
“실업중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경비원의 직  
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경비원의  
85.9%가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보수에 대하여  
불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책  
임의식을 가지고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  
수문제와 복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저임금문제와 후생복지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본경비업계는 건강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 노재보험, 노재상적보험, 소득보상  
보험, 퇴직금제도, 산업의료제도, 사내예금 및  
융자제도, 사내건강 및 교육제도 그리고 복지  
시설이용제도 등과 같이 재직중과 퇴직후의  
노후대책을 마련하여 경비원들에 대한 효율적  
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 제  
도 외에도 1979년 4월1일 특별법인으로 「전  
일경비후생연금기금」을 설립하여 경비원들의  
복리후생에 만전을 기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비원들의 저임금을 해  
소하고, 최저생활안정을 보장하여 주기위하여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 4027호로 「최저  
임금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현행 청원경찰들에  
게 적용하고 있는 「경비기준액고시제」와 같  
은 제도적 장치가 경비원들의 생활보장과 경  
비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실정이다.

급여의 지급에 있어서도 경비시설물의 도급  
액수에 관계없이 근무연수에 따라 또는 호봉  
에 따라 지급되는 「연공가산제도」를 도입하  
는 것도 바람직한 급여지급제도라고 할 수 있  
겠다.

그 외 산재 및 의료보험제도, 퇴직금제도,

자녀들의 장학금제도 그리고 경조사제도 등이 경비원들의 후생복지 및 사기양양 그리고 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으로 앞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3. 연구 및 발전방안

민간경비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민간경비 내적분야가 아닌 외적 분야인 연구소, 대학, 산업체, 그리고 국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더 한층 강화시켜 민간경비업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가. 연구소의 역할증대

현대 산업사회가 급격히 변동하면서 도시기능의 안전성, 경제생활의 효율성 및 편리성 그리고 쾌적성 등과 같은 모든 환경적 요인이 범죄로부터 예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연구소단위의 학문적인 연구가 끊임없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선진외국의 연구소 활동이나 기능 그리고 역할에 비하면 범죄와 관련된 연구들은 지극히 미진한 상태이며 더구나 민간경비가 필요로 하는 범죄와 환경과의 관계성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범죄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하여 연구소단위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범죄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차원이나 민간차원에서 더 많은 연구소나 기관이 설립되어 범죄예방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나 민간 또는 협회차원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발전적 방안으로 연구소가 설립하게 되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주요사업이나 연구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연구소의 주요사업으로는 ①민간경비업에 관련된 독자적인 연구 ②강연회, 세미나 등의 학술적인 행사 ③문헌 및 자료의 수집 ④민간경비에 대한 홍보활동 ⑤정기간행물 발간을 들 수 있다.

둘째, 연구소의 주요연구 내용은 ①경비 분야별 방법대책연구 ②경비상품개발 ③범죄경향분석 ④방범기기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 ⑤경비시장에 관한 연구 ⑥방범기기설치와 범죄예방 효율성 연구 ⑦비용과 범죄예방 효율성연구 ⑧세제우대에 관한 연구 ⑨손해배상 및 보험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주요사업과 주요연구내용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는 각 경비업체와 국가기관들이 연구소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끊임없는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나. 대학기구의 역할강화

경비산업을 위하여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

고, 기술을 개발하며, 새로운 경비시장의 수요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범죄예방을 가능케 하여 주는 원동력은 바로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달려있다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경비산업을 위하여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새로운 경비시장의 수요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범죄예방을 가능케 하여 주는 원동력은 바로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달려있다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미국에서는 1958년 첫 민간경비학과에서 대학졸업자를 배출시킨 이래 지금까지 미국 전역에 전문대학, 대학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서 민간경비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만 212개이며 전문경영인을 위한 단기과정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전국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sup>12)</sup>

한국 대학에서의 민간경비에 관한 학문적 발달이 늦은 이유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민간경비업체가 대학졸업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도 민간경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도 소홀하게 취급하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96년 현재 전체 민간경비원의 수가 6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경비산업의 총매출액이 년 1조여원에 이르는 시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민간경비업체 (1996. 6. 현재)가 931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대

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에서 경비지도자 배출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경비인력의 전문화는 한계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인력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우선 전문대학 수준의 대학교육과정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

#### 다. 산업분야의 역할증대

경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서는 연구소나 대학의 역할이나 기능못지 않게 방법기기의 개발이나 생산 그리고 판매하는 경비산업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대학이나 연구소의 이론적인 뒷받침과 산업분야의 기술적인 뒷받침이 서로 어우러져 조화를 잘 이룰 때만이 효과적인 방법활동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형식승인제도의 도입

한국의 방법장비는 일본이나 미국의 수입에 대부분 의존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전자 및 통신기기의 발달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

12) 미국경비산업협회(ASIS)는 세계 150여개의 지역으로부터 19,0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매년 2~3일간의 워크샵과 5일 간의 경비관련 세미나를 평균 1,500명의 회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실시하고 있다.

다. 현재 생산되는 방법장비는 침입강도를 감지하는 간단한 가정용의 방법장비를 비롯하여 은행이나 보석상의 금고안전장치 및 경보기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전자경보장치 등 다양한 방법기기가 시판되고 있고 얼마 전부터는 호신용으로 휴대용 방법장비까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계경비업체나 대규모 Intelligent Building의 중앙관제센터는 경찰관서나 파출소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체제가 되어 있고 순찰차에 즉시 수신되는 휴대용 경보기도 이제 실용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방법장비 및 시설에 관한 관리체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품질이나 가격의 문제 그리고 오경보(false alarm)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다.

개개의 방법장비에 대하여 용도별로 규격, 재질, 성능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형식을 승인하여 주는 「우수방법장비형식승인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방법장비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sup>13)</sup>

### (2) 기계경비의 보급

일반 국민들은 범죄예방활동을 경찰만의 고유한 기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같이 고정된 오랜 경비관념은 자위방법의식의 확대와 기계경비의 보급 및 발달을 오랜 기간

동안 방해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방법체제는 전자 및 기계경비를 이용한 방법, 방재, 방화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체제(Total Security System)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계경비보급을 위한 경비업체의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국민들의 경비개념의 전환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계경비의 일반적인 보급을 위하여 경비산업분야에서는 우수방법기기를 이용하여 경비시설 대상에 따라 표준방법기준을 설정하고 방법기기의 기능이나 형태 등도 경비대상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형태의 Model을 개발하여 주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3) 비용효과분석(Cost Benefit Analysis)

산업분야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기계경비의 보급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방법기기의 성능과 비용면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연구이다. 방법기구나 경비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설치나 조작 그리고 구입에 있어서 가격과 효용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비대상시설물과 방법기기와의 적합성 그리고 방법기기와 가격과의 효용성등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산업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13) 일본의 경우 기계경비의 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80년 4월부터 “우수방법기기형식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라. 민간경비전담기구설치

민간경비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간경비 전담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경찰위원회에서 민간경비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통일된 규율 및 통제를 가하고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일선 관할경찰서에 위임하여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그동안 민간경비업계가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었고 기타 제반사항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처리하여야 할 만큼 비중있게 다루어 지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경찰청 방법기획과 방법기획계에서 전반적으로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경비원 및 경비업체의 급증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통제가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시장의 확대에 따른 적절하고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경찰청 내에 민간경비를 담당하는 전담「과」의 설치를 한가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 대안으로써 「국가경찰위원회」가 민간경비의 전체적인 규율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경찰위원회의 지위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앞으로 성격을 경찰행정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특정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국가기관의 성격을 띠게 하고 동시에 민간경비의 중요한 정책 사항에 관계되는 허가, 예산, 교육, 감독, 규제사항 등을 관장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 민간경비업무를 관장하게 될 경우에는 민간경

비에 대한 기능으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① 민간경비의 제반제도 기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민간경비의 국가예산에 관한 사항 ③ 경찰조직과 민간경비간의 제반관련사항(수사,통신,시설,...등) ④ 민간경비업의 허가(허가요건, 허가갱신,허가변경사항신고,허가등의 수수료,...등)에 관한 사항 ⑤ 민간경비업의 행정처분(허가취소,영업정지,과태료,벌금,...등)에 관한 사항 ⑥ 민간경비인력의 자격증제도에 관한 사항 ⑦ 민간경비협회 규제에 관한 사항 ⑧ 민간경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전과조회,...등) ⑨ 민간경비인력의 교육훈련program의 규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경찰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경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일된 규율 및 통제를 가할 수 있고, 그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일선 관할경찰서에 위임하여,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증진방안

민간경비와 경찰의 효율적인 방법활동을 위

하여서는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위상징(status symbols)상의 문제나 역할수행상의 문제, 기본적인 방법활동 대상에서 오는 문제 그리고 업무수행 우선순위에서 오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양 조직간의 별다른 진전을 가져 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이들 양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대나 특성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상호간의 실질적인 방법활동의 능력증대를 위하여 민간경비와 경찰의 친밀화 방안(familization techniques) 몇 가지를 제안해보기로 한다.

#### 가. 책임자간담회의

민간경비와 경찰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한마디로 「함께하는 것(get together)」즉 서로의 역할, 능력 그리고 책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경험과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민간경비와 경찰이 상호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서는 정책의 빈곤으로 양 조직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호간에 접촉이 단절되고 있다. 따라서 양 조직의 방법능력향상을 위한 발전적 방안으로서 책임자간담회의 개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볼 수 있다.

민간경비와 경찰은 책임자간담회의를 정기

적으로 개최하여 책임관할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양 조직은 평상시 범죄예방차원에서 범죄의 형태, 시간, 방법 그리고 범죄의 특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교환이나 이들에 대한 방법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범죄사건 발생시에는 범죄수사를 위하여 범죄발생 현장보존이나 범인체포를 위한 업무역할설정 등을 효율적인 방법활동과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전에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여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친밀화 정책은 모든 문제를 공식화하고 민간경비와 경찰 사이에 경험과 접촉을 통해 생겨날 수 있는 편견 등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차원에서도 현존하는 고정적인 관념을 불식시키고 양 조직간의 협력증대를 위하여 서로의 경비시설물에 대한 방문이나 상호관심사에 대하여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양 조직의 방법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발전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전담책임자 및 합동순찰제도

책임자간담회의에서 결정된 정책수행이나 업무의 협력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민간경비와 경찰간의 접촉이나 연락과정을 공식화 시킬 전담책임자제도와 순찰업무의 실질적인 협력증진방안으로 합동순찰제도(Ride-Along Program)를 들 수 있다.

전담책임자제도는 양 조직의 접촉을 공식화하여 민간경비와 경찰의 무분별한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신뢰하는 관

계를 계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경찰에서는 민간경비와의 접촉을 전담하는 공식연락관과 민간경비에서는 경찰과의 접촉을 전담하는 연락담당자를 공식적으로 임명하여 두는 제도이다.

공식연락관은 민간경비의 운영이나 법률 및 제반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는 경찰관과 민간경비업체의 전반적인 운영정책이나 세부사항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식연락관은 민간경비책임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지위와 신뢰를 겸비한 원만한 경찰관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경비업체에서 경찰과의 공식적인 접촉을 전담하는 연락담당자도 경찰관서와의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원만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임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민간경비와 경찰이 범죄예방능력을 증진시키고 친밀화를 위하여 그리고 이와 같은 제도들이 아무런 잡음없이 오래도록 지속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양 조직의 책임자나 전담연락관들의 끊임없는 협조 및 이해와 폭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성장하여 왔기 때문에 경찰조직과 별다른 마찰은 생겨나지는 않았지만 멀지않아 방법활동 영역이 넓어지면 방법활동 실시에 따른 역할기준 설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넓은 역할이 요구된다.

#### 다. 상호역할기준설정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성장하여 왔기 때문에 경찰조직과 별다른 마찰은 생겨나지는 않았지만 멀지않아 방법활동 영역이 넓어지면 방법활동 실시에 따른 역할기준 설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할기준 설정은 양 조직간의 마찰 해소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경찰은 민간경비 업체를 범죄예방 조직으로서 제한된 시각과 불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이해하여 왔다. 따라서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을 불식시키고 양 조직의 방법활동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내적·외적인 차원에서 업무의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민간경비업체의 내적인 업무기준으로서는 선발, 교육, 훈련, 윤리, 근무조건, 경보대응체제 등을 들 수 있으며, 외적인 업무기준으로는 경찰, 고객, 보험회사, 연구기관과의 업무관련 기준과 등록, 허가 등을 규제하는 정부기관과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민간경비업체의 내적인 관계, 타 조직과의 관계 그리고 정부기관과의

외적인 관계 등을 상호협조적이고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전문적이고 기본적인 업무기준 설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의 경우 용역경비업법과 기타 관련법규가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경비 업체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며, 타 기관과의 상호작용 관계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경비 업체와 경찰 양 조직 모두 범죄예방과 범죄감소라는 측면에서 각자의 일상적인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정의되고 상세하게 규정된 업무수행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이 민간경비와 경찰의 업무역할기준이 설정 되어져야만이 범죄예방과 범죄감소를 위한 양 조직의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상호중과 협력의 차원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 라. 비상연락 및 경보대응 수립

경비업무중 경비원은 이상유무 발견시 신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신고방법은 경비회사보다 파출소나 경찰서에 우선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미루어 볼때 경비원과 경찰의 상호연락망 구축은 특히 범죄예방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비상연락망 설치의 말할 것도 없고 각 가정에 설치한 방법기기가

지 관할파출소나 경찰서에 연결되어 있어 지역사회방범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일반가정까지 방법기기의 연락망 구축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민간경비시설물과 경찰관서 또는 이웃간의 비상연락망 구축은 실질적인 방법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권장할 필요가 있다.

#### 마. 방법자문서비스센터 운영

민간경비와 경찰이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노력으로 범죄예방과 관련되는 모든 민간경비 업체명과 경비상품의 목록 등을 일반 시민들에게 배분하여 주는 경비자문서비스Center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비자문서비스제도의 운영은 지역 상공회의소나 방범위원회 그리고 반사회 등과 같은 모임이나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직들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들은 범죄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와 경찰이 공동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범죄유형별 경비수단이나 취약성에 대한 check-list를 설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check-list를 바탕으로,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동설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경비상품이나 경비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의 친밀감을 증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친밀화는 경찰과 민간

경비간의 성공적인 협력으로 귀결되어 범죄예방, 범죄수사 그리고 범인체포활동을 효과적으로 증진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경비업체, 동업조합, 방법위원회, 경찰 등의 조직에서 민간경비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기진작프로그램(incentive program)을 개발한다면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와 경찰의 경비자문서서비스제도는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 IV. 결 론

우리 사회는 지난 60년대부터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라는 급속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회병리현상을 야기시켜 왔다. 특히 사회병리현상중 범죄문제는 오늘날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찰은 사회기능의 분화와 경비수요의 급증으로 경찰의 고유업무조차 처리하기 힘든 경찰력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치안공백 상태를 메워 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이 서구 사회에서는 일찍부터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앞에서도 여러번 강조하였지만 앞으로는 범죄예방이나 범죄대응은 단순히 경찰자체만의 업무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로서 국민 모두가 경비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필요와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치안공백 상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비수요를 창출하는 수익자 개개인 스스로가 자위적인 차원에서 방법체제를 구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함께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가 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원 그리고 경찰의 지속적인 방법능력 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범죄없는 명랑한 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민간경비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속적인 방법능력 증대를 위하여 경비인력의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적합성 연구와 교육훈련 성과 분석, 교육시간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교육 성과와 범인 검거율과의 관계, 상황대응시간(response time)과 범인 검거율과의 관계 그리고 경비서비스와 경비부담과의 비용효과 분석(cost benefit analysis) 등이 앞으로 민간경비 발전을 위한 연구문제로서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폭넓게 검토되어 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 내 문 헌】

〈저 서〉

이윤근, 민간경비론, 공안행정연구원 刊, 1996.

이윤근, 황두철공저, 용역경비업법, 공안행정연구원 刊, 1996.

〈논 문〉

- 이윤근 ① 「A Study of Relationships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urity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석사학위논문, Wichita State Univ., 1984.
- ② 「한국 사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③ 「용역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통합 및 단일법안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집(제 20집), 1992.
- ④ 「2000년대 민간경비의 전망과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동국논총, 제 30집, 1994.
- ⑤ 한국의 무인기계경비현황과 향후

도입방안, 한국생산성본부(KPC), 1994.

- ⑥ Tasks Facing Korea's Private Security Business and its Prospects for the 2000'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Vol. 19.), 1995.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제 39호, 1995.

치안연구소, 치안논총, 제 11집, 1995.

【외 국 문 헌】

Robert L. O'Block, Stephen E. Doeren, Security and Crime Prevention, Butterworth, 1991.

William C. Cunningham and Todd H. Taylor, Private Security and Police in America, Chancellor Press, 1985.

Robert J. Fischer, "Security Education: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Journal of Security Administration, 1981.

일본전국경비협회, Security Time 7월호 (Vol. 193), 1996.

일본경비보장신문사, 경비업연감, 1995.

일본전국경비업협회, 일본경비업법 해설, 1996.